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급속한 교통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, 기존의 공급자 관점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「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9381호, 2023. 4. 18. 공포, 2024. 10. 19. 시행)됨에 따라,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 설계 원칙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 (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)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 원칙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
2. 지역 및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설계하고 기반시설 간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3. 첨단모빌리티 이용자가 주변 시설을 쉽고,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

② 법 제9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 기준은 「도로법」 또는 「도로교통법」 등에 따른 도로시설 관련 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2 (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) ① 법 제9조 제1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 원칙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</u> <u>2. 지역 및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설계하고 기반시설 간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</u> <u>3. 첨단모빌리티 이용자가 주변 시설을 쉽고,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</u> <u>② 법 제9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 기준은 「도로법」 또는 「도로교통법」 등에 따른 도로시설 관련 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